

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9월 14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운영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료급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.
- 계획수립과 지원대상(안 제3조, 제4조).
- 운영 및 운영자 모집(안 제5조, 제6조).
- 지도점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(안 제7조, 제8조).다량배출사업자에서 주로 다류·아이스크림을 조리·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(안 제2조제3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금천구 어르신 결식 및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.
- 계획수립과 지원대상(안 제3조, 제4조).
 -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운영 및 운영자 모집(안 제5조, 제6조).
 - 운영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
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
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
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장소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종교단체대상
- 지도점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(안 제7조, 제8조).

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급속한 고령화로 결식 및 건강상 우려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